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
----------	----

발의연월일 : 2023년 2월 9일

발의자 : 양순임, 오중균, 이호건, 김육영,
정윤주, 이일준, 임현주, 정기혁,
박영섭, 경수현, 진선아, 임태근

1. 제안이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 2023. 2. 9. ~ 2023. 2.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앙정부차원의”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주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외국의 <u>중앙정부차원의</u>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p> <p>2. · 3. (생 략)</p> <p>4. <u>지방자치단체의</u>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p> <p>5. · 6. (생 략)</p>	<p>제2조(적용범위) ----- ----- -----.</p> <p>1. ---- <u>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주최하는</u>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u>----- -----</p> <p>5. · 6. (현행과 같음)</p>